

【사건번호 2023-026】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이력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토지소유 이력데이터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 토지소유이력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제공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정보주체 소유 부동산(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포함)의 토지소재, 지번, 집합건물명명전유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자명 데이터를 API방식으로 제공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보존·보관하고,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제69조 및 제70조)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함(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

- 이 사건 데이터는 지적공부 중 '대지권등록부'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에 해당하며, 지적공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 등의 절차에 따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나, 개별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소유자 정보 기반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발급은 불가능함

-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홈페이지의 “내 토지 찾기” 메뉴에서 정보주체가 직접 성명과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인증서(공인 또는 금융)를 통해 개인인증하면 해당 정보주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 사건 데이터와 동일한 항목 제공), 이 사건 데이터와 같이 과거 소유했던 토지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함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토지의 소재, 소유자,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① 또는 ②를 가명처리한 정보 중 하나를 의미(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2020-012사건(자동차 차대번호), 2021-001사건(가축이력번호))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청 데이터에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한 방법과 절차로 정보주체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 사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서 제공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o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질 뿐,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위원회는 OPEN API와 관련한 사건에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위원회 조정사례 참조)

참고

OPEN API 관련 조정사례

□ OPEN API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신규 개발 및 제공 신청한 경우

■ 신청인 요청대로 개발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거부가 타당함

- 2014-013사건(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2015-009사건(대법원 경매정보), 2016-009사건(국세청 휴·폐업정보), 2018-004사건(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운행정보), 2019-008사건(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치법규), 2022-001사건(기획재정부 복권당첨데이터), 2022-004사건(금융위원회 벌점데이터)

- 제공거부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향후 API를 구축하여 제공하도록 함
 - 2021-003사건(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2022-040사건(한국철도공사 여객열차운행 데이터)

□ OPEN API의 수정이 용이한 경우

- 기술적 검토 결과 API수정이 용이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제공하도록 함
 - 2016-015사건(행정안전부 봉사참여정보 API): 주소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예: 경북, 경상북도 등) 신청인이 표준주소코드를 추가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하고 해당 OPEN API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정·제공하도록 조정(사전)
 - 2017-001사건(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API):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통신 판매사업자 전자우편주소)가 피신청인이 개방중인 파일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API의 제공데이터에는 제외되었던 사안에서, 해당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API를 수정하도록 조정(사전)
 - 2019-007사건(한국전력공사 분산형 전원 전신주 조회 API): 신청인이 원하는 검색기능(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분산전원 연계정보를 조회)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는 구현되어 있으나, API로는 구현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신청인 검토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OPEN API 검색조건 수정이 용이하여 수정·제공하도록 조정(사전)
 - ※ 단, 데이터 재검증을 위해 합의일로부터 2개월 후 제공하기로 함
 - 2019-014사건(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API): 검진기관 찾기 API의 응답 값에 검진기관 구분 값(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미 제공하는 다른 API를 함께 이용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기능이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검진기관 찾기 API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정·제공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함(조정성립)

□ OPEN API 수정이 용이하지 않고 수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가공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 2016-026사건(한국연구재단 학술참고문헌 API):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논문검색 API와 참고문헌 API를 연계(논문검색 API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논문검색 결과와 함께 각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목록도 모두 출력)하도록 API수정을 요청함. 피신청인 소명결과 논문DB와 참고문헌 DB가 별도로 존재하고, 각 DB의 구축시기가 20년 가까이 상이하며 DB의 용량이 방대하여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 신청인 요청대로 수정 시 접속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서버 과부하가 우려되며 현재 피신청인의 서버 용량 대비 트래픽이 많아 이미 서비스 중단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개선점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시스템의 구조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정성립)

□ OPEN API 수정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단 해당 비용은 공공 데이터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해당 비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2018-025사건(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API): 신청인은 기존 API에 데이터 4종을 추가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고, API를 수정·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합의함(조정성립)
- 신청 데이터에 범용성이 있어 추후 다른 이용자도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2020-012사건(국토교통부 첨부형 API):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제35조제1항), 향후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에 관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였음)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데이터법 제4조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며(제4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 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4.4.10.선고 2012두17384판결)
 -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 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법제처 해석례 11-0199)
- 공공데이터법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있다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에 관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승인요청과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는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자동차관련 정보의 제공여부나 제공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19.8.29.선고 2018구합85143판결)

- 공간정보관리법 및 시행령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 심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76조 제1항 및 제2항)
 - (심사신청)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i)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ii) 자료의 범위 및 내용, iii)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신청(시행령 제62조제1항)
 - ※ 단,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제76조제3항)
 -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i)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ii)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iii)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시행령 제62조제2항)
 - (승인신청) 신청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시행령 제62조제3항)
 -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i)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ii)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iii) 자료의

-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iv)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v)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 후 승인여부 결정(시행령 제62조제4항)
- (제공)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시행령 제62조제5항)
 - 동 규정은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신청 및 대상, 이용범위, 절차(대통령령에 위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신청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이나 도면 자체가 아니라 대장을 구성하는 일부 데이터 항목만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상기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형사절차전자법 제6조제3항 등의 경우와 달리 자료의 비밀유지나 목적외 이용금지 등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데이터가 제공되더라도 양 법률의 모순·저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절차를 근거로 공공데이터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토지에 관한 데이터는 대국민 개방이 극히 어렵게 되어 국민의 공공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자동차관리법에도 전산자료 이용신청·승인절차(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2015-012사건, 2017-028사건, 2018-025사건 등),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2)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있음(2028-028사건)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정보주체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 사건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원칙(privacy by design)'에 따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
-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이 사건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률상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고,
 - 피신청기관의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및 신청인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제2023-011-116호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가진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고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피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에 따른 지적 전산정보로서 이용을 위해서는 동조 및 시행령 제62조 등에 따른 지적 전산자료의 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적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안이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 그 결과,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 등이 공간정보 이용을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승인을 요구하며, 실무적으로도 민간의 이용자가 제공신청하기 극히 어려운 제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일반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달리 특별히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및 범위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서는 API 신규 구축이 필요한데,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API 개발, 민간 인증서 도입 및 API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신청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절차 및 예산의 문제로 즉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그럼에도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제공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 요청과 같이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토지소유이력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향후 관계기관 검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한편,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적용하여 이용한 후 파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적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피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